

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(공포)

☐ 제 명: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
일부개정규칙안

☐ 개정사유

-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(안)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행적
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방지하고, 향후 내실 있는 출장 운영을
도모하기 위하여 서해구의회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.

☐ 주요내용

-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의 사적
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의원의 임기 만료 전 국외출장 제한 및 허가 사항을 구체화하고 징계처분
및 환수조치 시 최대 2년 국외출장 제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- 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심의와 관련, 위법·부당한 출장에 대한 감사·조사
의뢰를 의무화 사항으로 규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함(안 제10조)
- 직원 보호를 위하여 직원의 위법·부당 지시 거부 및 불이익 금지 등에
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15조)

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장 고 선



2026년 10월 1일

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규칙 제62호

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서해구의회의원(이하 “의회의원”이라 한다.)”를 “서해구의회의원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”로, “의회의원”을 “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원(이하 “의회의원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전단 중 “의회의 의장”을 “의회의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의장은 위원”을 “의회의장은 심사위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1인을 포함하여 7인”을 “1명을 포함하여 7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지방의회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”를 “의회의원이 제2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”로 한다.

⑥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,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·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서해구의회”를 “서해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지방의회”를 “의회”로 한다. 제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5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

② 의회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 제1호에서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, 긴급성,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.

③ 의회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제10조제1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의회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·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, 국민권익위원회,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직원 보호 등)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회위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,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회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.

② 의회위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, 사적 심부름,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원(이하 “ <u>의회의원</u> ”이라 한다.)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<u>서해구의회의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허가권자) 제2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<u>의회의원의</u> 공무국외출장은 <u>의회의장의</u> 허가를 받아야 한다.	제3조(허가권자) --- <u>각 호</u> ----- ----- <u>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원(이하 “의회의원”이라 한다)</u> -----.
제4조(심사위원회의 설치) ① (생략)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 · 법조계 · 언론계 ·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를 통해 <u>의회의 의장이</u> 위촉한다. 이 경우 <u>의장은</u>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.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<u>1인을 포함하여 7인</u>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.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. ④ · ⑤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4조(심사위원회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의회의장</u> ----- ----- <u>의회의장은</u> <u>심사위원</u> ----- -----. ③ ----- ----- <u>1명을 포함하여 7명</u> --- ----- -----. ----- -----. ④ · ⑤ (현행과 같음) ⑥ <u>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</u>

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⑦ · ⑧ (생략)

제6조(회의) ① (생략)

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의회사무국 담당팀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④ · ⑤ (생략)

⑥ 의회위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.

제8조(공무국외출장 제한 등) ①
의회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

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,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·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.

⑦ -----
의회의원이 제2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-----

-----.

⑧ · ⑨ (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)

제6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1
명-----
-----.

③ -----
----- 서해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-----
-----.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----- 의회 -----

-----.

제8조(공무국외출장 제한 등) ①

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3.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

<신설>

4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<삭제>

4. 제5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

3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② 의회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 제1호에서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, 긴급성,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.

③ 의회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

② (생략)

제10조(출장보고서 제출) ① ~

② (생략)

③ 심사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·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,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.

<신설>

④ (생략)

<신설>

호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.

⑤ (현행 제2항과 같음)

제10조(출장보고서 제출) ① ~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제1항 -----

-----.

④ 국회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·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, 국민권익위원회,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
제15조(직원 보호 등)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회위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,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

을 주어서는 아니된다.

② 국회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
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
요, 사적 심부름, 회식 강요 등
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
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